제9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6. 5. 13.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6년 5월 13일 14:00 ~ 15:11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권	대 영	부위원장
안	창 국	위　　원
김	범 기	위　　원
김	성 식	위　　원
유	상 대	위　　원
허	범	위　　원
이	세 훈	대리참석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6년도 제8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9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6년도 제7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8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224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25호『**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증권사의 중기특화 제도 참여기회 및 중장기 자금 공급 유인 확대를 위해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 (위원)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안인데, 사실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이나 특화된 펀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계속 팔로우업(follow up) 해 주시면 좋겠고,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CB 같은 것이 저가 자금조달 수단으로 계속 활용되고 있던데, 그런 방식 이외에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같이 검토 부탁드림.

○ (보고자)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는데 그때 점검내용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더 살펴보겠음.

○ (위원) 지금 대형사들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앞으로 이런 초대형 IB들의 성장세가 커지면 시간이 지나면 중·소형사들의 공간이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봄. 그런 측면에서 중·소형사들을 포함한 부분을 꼼꼼하게, 이런 특화된 업무를 할 수 있게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신경써주기 바람. 두 번째는 실질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요청하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의견을 잘 들어주시기 바람. 세 번째는 결국은 정책금융과 150조 원 펀드가 연계된 비즈니스를

했으면, 150조 원 펀드가 중견·중소기업으로, 또 지역으로 많이 흘러갔으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림.

○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6호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다올투자증권㈜을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으로 조치(과태료)하는 내용

○ (위원) 제226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조치를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⑴위반행위 발생 이후 내부통제 개선 노력이 있었던 점, ⑵일부 투자자는 사업과 관련된 자로서 통상적인 일반투자자와 다른 점, ⑶총 8건 중 2건은 만기 연장 외에 직접적인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증선위 수정심의안에서 과태료 총액의 30%를 작량 감경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227호 『**NH투자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NH투자증권㈜을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조치(과태료)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8호 『**㈜아든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관련 공시의무를 위반한 ㈜아든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9호 『**현대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현대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는 내용

○ (위원) '운용사가 대주주(계열사)의 부동산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 금지(내규 반영)'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적 금지는 무엇인지?

○ (보고자) 자본시장법상 펀드 이해관계인과 거래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지만 펀드에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0호『**토스뱅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토스뱅크㈜에 대해 펀드판매업(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및 투자매매업)하는 내용

○ (위원) 이번에 토스가 파는 펀드에 대해서 상장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공모 방식의 판매업무에 한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논리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과거 금융위 해석에서도 상장된 ETF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하는 것으로 증권사의 업무영역으로 봐서 여기에서는 제외로 하고, 상장되지 않은 공모펀드의 판매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위원) 저희가 예전에 샌드박스 통해서 36개 자산운용사한테 허용을 했는데, 비상장펀드 일부를 떼어서 ETF로 상장시키는 계획(scheme)을 저희들이 인가해준 적이 있음. 그것은 비유동

자산을 가지고 상장한 ETF 같은 것은 class를 나눠서 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취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그런 유형의 애매한 경계에 있을 때는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 (보고자) 그것도 상장 class는 상장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다른 상장 상품하고 동일하게 그것을 중개하는 것은 증권업의 영역으로 봐서 그 class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판매를 못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1호 『㈜**우리카드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우리카드의 약관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2호 『**한화생명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IT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제232호 안건과 관련하여 한화생명보험㈜에 대한 조치를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25.9.3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안전성 확보의무 과태료 산정기준 개편 방안」에 따라 ’25.9.3일 이후 상정되는 관련 제재건에 대해 변경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금번 위반사항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제5호, 제29조제6호는 각각 과거 위반사항인 제15조, 제32조 위반과 별개의 수범사항이므로, 과태료의 20% 가중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이에 따라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9,6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233호 **『중소기업은행 2026 회계연도 인건비 추가 경정예산안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중소기업은행의 금년 인건비에 대해 추가 편성 및 집행을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금융위원회 제9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11분 폐회)